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4

제 출 자 : 서초구청장
제출년월일 : 1996. 5.

가. 제안이유

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자치구 기구·인력 보강지침이 시달('96. 5. 2)되어 자치구에 가스계 및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가스안전 관리기능 및 현장위주의 안전지도·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소요인력 6명에 대하여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 되었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구의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34명에서 940명으로 6명을 순증함. (안 제2조 제1호)

- 산출내역

. 산업과에 가스계 신설 : 6급 1, 7급 1 증원

. 민방위과에 안전지도계 신설 : 6급 1, 7급이하 3 증원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)
제14조(총정원의 책정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"총정원"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책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·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 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c 예산조치 :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의 추경반영 검토

o 합 의 : 내무부 자치 12200-321('96. 4. 29), 자치 12200-323('96. 4. 30)호와 관련 서울시 시정 12200-337,338('96. 5. 2)호로 기구·인력 보강지침 시달됨.

o 기 타 : 없음.

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"934명"을 "940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구의 본청 · 구의회사무국 ·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·
1. 구 본 청 : 934명	1. · · · · · · · : 940명
2. 구의회사무국 : 26명	2. · · · · · · · : · ·
3. 직 속 기 관 : 78명	3. · · · · · · · : · ·
4. 동 : 375명	4. · · · · · · · : · · ·